사업 내 MBB 자격검정 실시지침

제정일 2020. 09. 04 개정일 2021. 12. 15

정비기술교육센터 042-600-806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가스설비 점검정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 개인별 기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내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 이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험위원" 이라함은 출제위원, 관리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을 말한다.
- 2. "답안지" 라함은 지필시험 시행시 평가위원이 채점하는 답안지를 말한다.
- 3. "비번호" 라함은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결과물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시험결과물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4. "시험결과물" 이라 함은 수험자가 실기시험 시행 중 제출한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격검정과 관련 있는 외부관련자 및 동 자격검정의 수험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은 설비보전 기계, 설비보전 계전, 설비보전 관로 등 3개로 하며, 등급은 전문가(마스터/MBB) 단일등급으로 한다. 주요 직무는 천연가스설비의 점검정비에 해당한다.

종 목	등 급	기 술 력
설비보전 기계	전 문 가 (마스터)	전문가(Maste / MBB)
설비보전 계전		 · 천연가스 관련 해당 자격분야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지식과 실무경험 보유 · 프로젝트 전체를 리드하고 해당기술의 지도가 가능하며,
설비보전 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여 기존 기술 품질을 높일 수 있음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자격의 취득) 분야별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격) 분야별 전문가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응 시 자 격			
	○ Pro-way 기술진단 평가점수 80점 이상자를 응시자격자로 함			
	항 목	내 용	배점	
	경력평가	경력기간	25	
		기술응용력	10	
분야별	역량평가	문제해결력	10	
전 문 가 (마스터)		지식/스킬	15	
(1—-1)	교육이수	교육수강률	30	
	자 격 증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10	
	합계	100점 만점	100	
	* 역량평가는 1, 2	차 직상위 평가자 점수 합산(50:50)		

제7조(자격검정 방법)

1. 자격검정 평가항목은 기술진단 평가, 지필시험, 면접시험, 교육이수, 사내강사 실적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천연가스설비 점검 및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등 급	검 정 방 법				
분 야 별 전 문 가	항 목	방 법	배점		
	기술진단 평가점수	(평가점수×20)÷100	20		
	지필시험	구분배점관련분야 이론10직무분야 지식10문제해결력10연관분야 지식10* 평가위원 평점 평균	40		
(마스터)	면접시험	* 평가위원 평점 평균	30		
	교육이수	(연관기술 해당 등급별 이수 교육 과정수 ÷ 연관기술 해당 등급별 전체 교육과정 수) × 10	5		
	사내강사 실 적	사내강사 실적(당해연도 기준) 2H 4H 6H 8H 10H 1 2 3 4 5	5		
	합계	100점 만점	100		

2. 지필시험과 면접시험 검정시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등 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분 야 별 전 문 가 (마스터)	지필시험	주관식 3~5개 항목 · 관련분야 이론, 직무분야 지식, 문제해결력 등
	면접시험	전문실무 2~4개 항목 · 관련분야 이론, 직무분야 지식, 문제해결력 등

제8조(출제기준) 출제기준은 검정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난이도	출제내용	출제비율
지필시험	상	전문기술 응용 및 해결력	70%
	중	중급수준의 능력 측정	30%
면접시험	상	고급실무	70%
	중	중급실무	30%

제9조(합격결정기준) 기술진단평가, 지필시험, 면접시험, 교육이수, 사내강사 실적을 합하여 총점 8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제3장 자격검정 시행 조직

제10조(사업 내 MBB자격검정위원회 구성 등)

- 1. 사업 내 자격검정을 위해 **정비기술처** 내 '사업 내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 2. 위원회는 '사업 내 자격검정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 1인과 출제위원, 평가위원 각 5인 이하로 둔다. 출제위원과 평가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감독위원은 자격 검정 각 분야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1인~4인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처장급 이상으로 하며, 사업 내 자격검정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 4. 출제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 내 자격검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 5. 감독위원은 4급 이상으로 하며 지필 및 면접시험의 진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 6. 평가위원은 평가 및 채점을 담당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 7. 사무국은 사업 내 자격검정에 대한 업무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2. 시험의 과목선정, 출제, 시험, 감독,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시험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 4. 합격자 확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사업 내 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
- 6. 출제위원 및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약서를 징구 한다.<신설 2021.12.15 >

제4장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제12조(자격검정 시행 공고 등) 시험은 매년 1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작 14일 전까지 시험계획을 확정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험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1. 시험일시
 - 2. 자격종목
 - 3. 응시자격
 - 4. 시험과목
 - 5. 시험장소
 - 6. 준비물

제5장 자격검정 시행

- 제13조(검정시행 총괄) 위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시험문제 출제, 기술회의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1.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등 내·외부위원 위촉 및 출제요청시 비공개(수결재 등) 시행 및 문서(민감 정보) 별첨 등에 의한 방법으로 주의하여 시행하며, 문서 접수 처 또한 비공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21.12.15 >

제14조(시험문제의 출제 및 평가)

- 1. 출제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필시험 및 면접시험의 2배수 이상 예상문제를 개발 하여 시험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시험 1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3.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4. 출제 및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소정의 출제 및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교육훈련지침 〈별표 1〉 교육소요비용 지급기준에 의거해 산정, 지급한다.

제15조(시험문제 관리 등)

1.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시험문제 관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감독위원 중 1인이 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3. 시험문제 관리위원(기술별 1인)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파일 및 자료 포함)한 즉시 문제 확인 등 파일 및 자료 「보안설정」관리에 철저히 하고 문제 취합, 선정에 있어서 또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4. 시험문제는 인쇄 즉시 봉인하고 고사장에 우편 등 배송의 경우 배송 전, 후 보안 관리 상 시건장치가 견고한 금고나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는 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위원이 보관하고, 동 보관장소의 개폐는 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위원 만이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 등 2인 이상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다.
- 5. 시험평가 시(평가 당일) 출제문제 관리, 절차 등 감사인 또는 준감사인과 협의하고 입회를 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

제16조(시험문제 인쇄)

- 1.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 2.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3. 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7조(검정시행자료 등)

- 1. 위원장은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지필 및 면접시험 시행자료 중 수험자가 지참하여야 할 장비 또는 재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재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조(감독위원의 위촉) 감독위원은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 제19조(감독위원 기술회의) 위원장은 시험 출제, 시행전에 감독위원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 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지필 및 면접시험에 있어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 행위자 처리요령, 채점방법, 평가장소 관리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0조(시험평가 등)

- 1. 지필시험의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2. 지필시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파쇄 등) 시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관리에 철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 3. 면접시험은 종목별 수험자 1인 개별면접으로 시행한다.
- 4. 지필 및 면접시험 결과와 기술진단평가점수, 교육이수, 사내강사 실적을 합한 최종결과를 합산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5. 평가 장소는 대전본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기술·종목별 지필/면접 시험장을 반영한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장소 대관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1.12.15 >

제6장 합격자 관리 등

- 제21조(합격자 공고) 위원장은 검정 종료 후 3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며,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사업 내 게시판 또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자격증 발급 등) 위원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합격자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23조(자격의 유효기간) 사업 내 MBB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는 5년마다 사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사후교육은 관련 전문과정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학점 기준 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1. 분야별 마스터/MBB 취득자에게 우수직원 포상을 부여하며, 평가 취득점수에 따라 포상계 획에 의거 사장상 1등급~3등급으로 분류한다.
- 2. 분야별 마스터 취득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제7장 부정행위 처리 등

제25조(부정행위 기준 등) 시험 중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
- 2. 답안지를 교환하는 경우
-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는 경우
- 4. 다른 수헊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경우
-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경우
-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경우

-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치르게 한 경우
-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 11.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 1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한 경우

제26조(부정행위자 처리 등)

- 1. 위원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
-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결과를 사업 내 게시판 또는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 약 서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업 내 MBB자 격검정 시험(지필/면접) 출제, 평가위원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시험(지필/면접) 출제 문제 및 정보와 관련하여 시험 종료시까지 해당 내용을 외부로 절대 공개, 유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2. 시험 출제, 평가위원으로서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응시자와의 내외부 사적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위 사항을 어겼을 시, 위규 사항에 대해 공사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서 약 인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귀중

사업 내 자격검정 합격자 관리대장

발급번호	자격종목	소속	사 번	성 명	발급일	확 인

[별지 제3호]

[전면]		○ 전문가(마스터) 자격증 -tech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ı	사진	자격번호 자격종목 자격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합격년월일 합격년월일 전문가(마스터)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한국기소기술광사

(후면) 변경내용 확인 변경내용 확인 이 카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 규정에 의거 교부한 자격증입니다. 이 아 자격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042)600-8352(인재육성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